

매장 음악은
여러분 사업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매장 면적별 음악 공연권료 납부 기준

1.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

등급	영업허가면적	납부 금액*
1	50m ² ~ 100m ² (약30평) 미만	월 4,000원
2	100m ² ~ 200m ² (약60평) 미만	월 7,200원
3	200m ² ~ 300m ² (약90평) 미만	월 9,800원
4	300m ² ~ 500m ² (약150평) 미만	월 12,400원
5	500m ² ~ 1,000m ² (약300평) 미만	월 15,600원
6	1,000m ² (약300평) 이상	월 20,000원

2. 체력 단련장(헬스 클럽 등)

등급	영업허가면적	납부 금액*
1	50m ² ~ 100m ² (약30평) 미만	월 11,400원
2	100m ² ~ 200m ² (약60평) 미만	월 22,000원
3	200m ² ~ 300m ² (약90평) 미만	월 28,800원
4	300m ² ~ 500m ² (약150평) 미만	월 37,000원
5	500m ² ~ 1,000m ² (약300평) 미만	월 46,400원
6	1,000m ² (약300평) 이상	월 59,600원

* 납부 금액은 저작권자와 가수 및 연주자, 음반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공연권료의 합산 금액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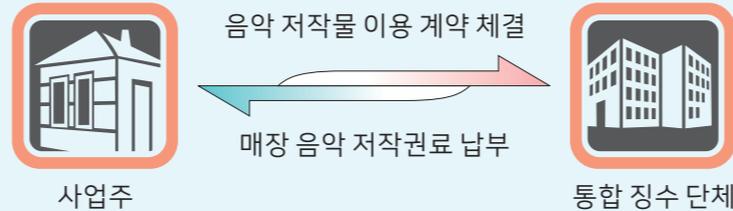
QR(큐알) 코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통합징수로
납부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3가지 권리에 대한 이용 계약은 각 권리자 별로 진행되지만
납부는 유형별 통합 징수 단체를 통하여 원스톱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별 징수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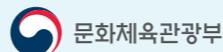
구 분	통합 징수 단체	대 상 업 종
제1유형	통합 징수 단체	노래 연습장,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 학원, 전문 체육 시설, 공연장 등
제2유형 (가)	통합 징수 단체	2018년 납부 대상 업종 :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 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 경마·경륜·경정, 골프장, 스키장, 항공기, 선박, 열차,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유원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제2유형 (나)	매장 음악 사업자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02-2660-0532~4 www.komca.or.kr
-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02-333-8766 www.koscap.or.kr
- (사)한국음악실연자연협회 02-2659-6947 www.fkmp.kr
- (사)한국음반산업협회 02-3270-5956 www.riak.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1800-5455 www.copyright.or.kr

*온라인 사이트 : <http://goo.gl/7konJS>
www.kofoco.or.kr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발행처



2018년 하반기부터
매장 음악 저작권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음악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매장 음악 저작권 안내

매장음악 공연권료 불편신고센터
상담 대표전화 **1811-8230**



함께해요, 음악 저작권

오랜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해 왔던 매장 음악의 공연 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의 납부 시기를 국내 음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면적 50m² (약 15평) 규모의 커피 전문점 기준

참고로, 공연 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합쳐서 공연권료라고 부르며,

*공연 사용료는 작사 작곡가에게,

*공연 보상금은 가수 및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매장 음악을 이용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월 2,000원의 공연 사용료와 월 2,000원의 공연 보상금(가수 및 연주자, 음반 제작자 각 1,000원)을 합친 월 4,000원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면적 50m²(약 15평) 규모인 커피, 생맥주 전문점의 경우

매장 음악 저작권,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공연 사용료 납부 대상 사업장

- 노래 연습장, 단란 주점, 유흥 주점
- 경마장 등의 사행산업 시설 및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 여객용 항공기, 열차, 선박 등 교통 시설 및 호텔, 콘도, 유원지 등 관광 시설
- 대형 마트, 백화점, 전문 판매점, 쇼핑 센터

그러나, 2018년 8월 23일부터

-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 중 면적 50m² 이상의 사업장, 복합쇼핑몰 및 그밖의 대규모 점포가 새롭게 공연 보상금과 공연 사용료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Q.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나요?

A. 법률상 보장된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하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 적정한 금액을 정해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Q.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A.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 이중 납부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직접 구입한 CD나 온라인 유료음악서비스에서 구매한 음악은 개인 감상용이므로 이를 매장에서 트는 경우 별도의 공연 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음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Q. 프랜차이즈 매장일 경우에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음악을 사용하는 해당 매장의 사업주가 내야 하지만 계약을 통해 본사가 매장 음악 저작권을 책임지기로 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내야 할 것입니다.

Q. 만약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률상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좋은 음악이 탄생하게 될 동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음악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납부에 동참해주세요.

Q. 음악을 트는 매장은 모두 공연 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A.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경우 우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업종만이 납부 대상입니다. 또한 면적 50m²(약 15평) 미만의 매장은 납부 예외 대상입니다.

"음악 저작권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문화 지킴이입니다."

